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안전표시인증과

2018. 8. 31. ~ 9.12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차

1. 식품표시 개요
2.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표시 개요

식품 표시의 중요성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적 수단

- * 비대칭성 :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 정보의 대칭성이 보장되면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소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짐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는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러한 제품이 더 많이 생산되는 결과로 **시장실패 초래**
 - * 건강에 위대한 성분의 존재, 영양정보 등 공공재적 성격의 정보 등 생산, 판매자가 구매자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개입을 통한 식품표시제도는 이를 보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식품 표시의 중요성

- **소비자 개인이 외부효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후생에 영향**
 - 소비자의 식품소비는 **환경, 보건, 노동생산성, 산업구조에 직·간접적인 영향** 초래
 - 개인의 소비가 외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식품표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 * [예시] 영양표시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편익은 비용에 비해 높지 않지만 국민건강, 노동생산성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
 -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비 : ('07) 6.7조원 → ('14) 18.8조원(국민건강보험공단)
- **제품 정보는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수단 및 건전한 거래 확보 환경 조성**
 - 산업체 측면에서 식품표시는 **제품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해당제품의 특징을 강조한 마케팅이 가능**
 -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

식품 표시의 기능

- **제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
 -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원재료명 및 함량, 내용량[중량, 용량 등]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원산지
- **소비자를 위한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 제공**
 - 보관 및 취급방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영양표시[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나트륨 등]
- **식품 판매, 홍보,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 저 지방, 저 콜레스테롤
 - 식이섬유 풍부 등

식품 표시 개요

식품위생법 표시관련 규정

규정	표시 내용
제10조 표시기준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등 의무표시사항을 규정
제11조 식품의 영양표시 등	영양표시 대상식품에 대해 영양표시 규정
제11조의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표시토록 규정
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규정
제12조의3 표시광고의 심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 규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명칭 등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 금지 규정

축산물위생법관리법 표시관련 규정

규정	표시 내용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닭·오리의 식육, 포장육, 식용란, 의무표시사항을 규정

표시관련 타법 사항

- 먹는샘물등 - 먹는물관리법(환경부)
- 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 포장양곡 - 양곡관리법(농식품부)
- 도로명표시 - 도로명주소법(행정자치부)
- 전자상거래상 표시 - 전자상거래등에서 상품등의 정보제공(공정위)
- 전통식품품질인증표시 - 식품산업진흥법(농식품부)
- 술품질인증표시 -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 19세미만 판매금지 표시 -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 민속주, 주세면세용, 군납용 등 용도표시 - 주세법(국세청)
- 농수산물원산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구성

I. 총 칙

1. 기준의 목적
2. 기준의 구성
3. 용어의 정의
4. 표시대상
5. 기준의 적용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2.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별지 2」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도 1] ~ [도 5]

[표 1] ~ [표 6]

『축산물의 표시기준』 구성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표시대상]

제4조 [표시사항]

제5조 [표시방법]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7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제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9조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10조 [중량 등의 허용오차]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1. 축산물의 일반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별표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표1]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도1]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

[도2]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

[도3] 닭·오리의 식육의 합격표시

[도4]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 표시 방법

용어의 정의

1. “주표시면”

용기 ·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으로서 [도 1]에 따른 면

2. “정보표시면”

용기 · 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으로서 [도 1]에 따른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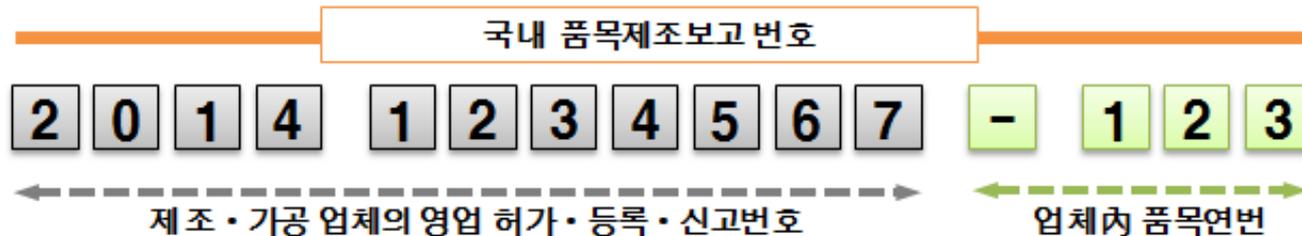
용어의 정의

3. “복합원재료”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

4. “품목보고번호”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번호



용어의 정의

5. “축산물”

-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 포장육: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 원유: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 낙타유나 마유는 원유에 포함되지 않음]
- 식용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 닭·오리·메추리알 [* 타조알, 거위알, 꿩알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축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각각 식육, 원유, 알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가공품

표시대상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함
- 식품첨가물제조업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
-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수입식품 포함)
-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고 가맹사업으로서 그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제조·가공, 조리하여 용기·포장에 제품명을 표시하는 식품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제품을 포함한다)

표시대상

3. 축산물가공품

-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
-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 중 축산물가공품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4. 3호 외의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5.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만드는 포장육

6.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축산물의 개별기준에서 정함)

7.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

표시 기준의 적용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식품유형, 식품첨가물 명칭 변경시 표시기준 변경과 관계없이 우선 적용**

표시방법

1.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III. 개별표시 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cm²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음

[사례]



표시방법

2. 외국어의 혼용 또는 병기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 가능

[식품]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

-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가능

[축산물] 외국어 활자크기 규정 없음

표시방법

3. 주표시면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한다)을 표시하여야 함

[축산물]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냉동제품 또는 냉장제품**

-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 가능**

표시방법

5. 활자크기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다만, 정보표시면의 면적[도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하여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타법포함]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함



10 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후 남은 공간
업체 활용 가능

면적 부족 시
의무표시사항만
표시



표시방법

6. 내포장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 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음

- **[식품]** 다만,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 활자크기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7. 점자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표시방법

8.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소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OEM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은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함(다만, 농·임·수산물, 주류는 제외)

[예시]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축산물]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표시규정 없음

표시방법

9. 세트포장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축산물] 개별제품과 외포장지에 표시사항 모두 표시. 다만, 외부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개별 제품에만 표시 가능

- 이 경우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함(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10. 원래 표시사항 변경 금지

-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다만,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에 맞게 표시하여야 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 **[축산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사례]

- 식품소분업소에서 재포장한 포장지에 원래 표시사항에 없는 내용 추가 [X]

표시방법

11. 수입식품

-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안됨
-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다.
-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가능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한글표시를 생략가능.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은 제외

표시방법

11. 수입식품

-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식품 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가능

[축산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서 수출국의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은 한글 표시 생략 가능

표시방법

12. 직영점 및 가맹점 공급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또는 품질유지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가능

- 다만, 여러 종류의 식품이 함께 포장된 덕용제품의 경우 제품명과 업소명 및 소재지를 가맹사업자가 POS(point of sales)시스템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그 표시를 생략가능

표시방법

13.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함

-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 2)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재료용 제품의 경우
- 4) 허가(등록 또는 신고)권자가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 5)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표시방법

6)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의 경우

7) 식품제조·가공업소(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판매 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 으로 표시한 경우 표시사항

8) 방사선조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9)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축산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

표시방법

14. 원료용 제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가능
[축산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가능

15.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 사용

[식품]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에”,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18.4.26. 신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1) 표시대상

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18.4.26.개정)**

나) 가)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다) 가) 및 나)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2)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표시란** 마련

[예시] 계란, 우유 새우 함유

-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알레르기 표시 생략 가능(18.4.26.신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2. 혼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통하여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제품의 원재료로서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표시하지 아니함**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3. 무글루텐 표시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 가능

- *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는 ‘글루텐 불내증(gluten intolerance)인 셀리악병(ceeliac disease)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표시
- 소비자들에게 무글루텐 제품이 특별히 건강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광고하는 업체의 무분별한 강조표시 금지
- * 셀리악병 : 글루텐 성분이 없는 식단만 섭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면역 소화기능 장애 증상으로 체내 영양소 흡수 곤란, 영양결핍, 골다공증, 성장지체 등 유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4. 그 밖에 식품의 주의사항 표시

- 1)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 식육 등 냉동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 2) 과일·채소류음료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 축산물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3) **[식품]**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4)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 라는 내용의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5) **[식품]** 당알코올류를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있게 하기 위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6) 식품,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 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다만, 선도유지제에 직접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정보표시면에 표시
- 7)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 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의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8)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 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와 “총카페인 함량 000 mg ” 을 표시. 이 때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 \sim 110\%$ (단, 커피 및 다류는 120% 미만)으로 함
[축산물] 카페인의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120% 이하
- 9) **[식품]**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표시
- 10)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11) 아마씨 [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식품의 주표시면에 그 함량 [중량]을 표시하여야 함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5. 그 밖에 식품첨가물의 주의사항 표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18.4.26.개정]

6. 그 밖에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주의사항 표시

- 1) 식품포장용 랩을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 사용하도록 표시
- 2)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 3)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식품위생법 13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 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보존료 무첨가” 등의 표시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 나.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 다.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 라.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 마.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인 경우에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100%”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100%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식품첨가물 명칭 또는 용도 표시하여야 함**
[18.4.26.개정]
[예시] 100%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오렌지주스[산조조절제 포함]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명칭 이외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안됨

[예시] “MSG” 표시

아.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시]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장기보존식품

가) 통·병조림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2)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인삼 또는 홍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인삼 및 홍삼성분을 함유한 제품)

3) 기타

가)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식품의 주표시면에 그 함량(중량)을 표시하여야 함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장기보존식품

가) 통·병조림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2)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인삼 또는 홍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인삼 및 홍삼성분을 함유한 제품)

3) 기타

가)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식품의 주표시면에 그 함량(중량)을 표시하여야 함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식품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과자류

가) 유형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나) 표시사항

[1] 제품명

[2] 식품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영업장의 명칭 [상호] 및 소재지]*

[4] 유통기한(빙과류는 제조연월일, 단, “제조연월” 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단, 열량은 과자, 캔디류, 빙과류에 한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6] 원재료명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식 품

[7] 영양성분(과자, 캔디류, 빙과류에 한함) 및 1회 섭취참고량

[가] 과자

- 강냉이, 팝콘 : 20 g
- 기타 : 30 g

[나] 캔디류

- 양갱 : 50 g
- 푸딩 : 100 g
- 그 밖에 해당식품 : 10 g

[다] 추잉껌 : 2 g

[라] 빙과류 : 100 g(ml)

[8] 용기·포장 재질

[9] 품목보고번호

[10]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11]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식품

[12] 주의사항

- [가]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 [나]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 [다]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13] 방사선조사(해당 경우에 한함)

[14]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15] 기타표시사항

- [가] 유탕 또는 유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 또는 “유처리제품”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나] 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는 그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함
 - [다]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소위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하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열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등의 표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식품

다)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껌 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에스테르검, 폴리부텐, 폴리이소부틸렌, 초산비닐수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탄산칼슘, 석유왁스, 천연검, 탭크, 트리아세틴은 “껌기초제” 또는 “껌베이스” 로 표시할 수 있음

식품

31) 자연상태 식품

가) 유형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나) 표시사항

-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 (3)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 (4) 내용량
- (5)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 (6)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식품

[7]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8] 기타표시사항

-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1]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2]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을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가. 식품첨가물

1) 표시사항

가) 제품명[「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그 첨가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업소명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라) 내용량,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용기·포장 재질, 사) 품목보고번호, 아)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다만, 동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차)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해당 경우에 한함]

카) 기타표시사항

- 타르색소를 혼합 또는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는 “혼합” 또는 “희석” 이라는 표시와 실제의 색깔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천연색소류 제제 및 비타민 제제는 각각 색가 및 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

나. 혼합제제류

1)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업소명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라) 내용량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용기·포장 재질, 사) 품목보고번호

아)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다만, 동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차)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해당 경우에 한함)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식품첨가물

키) 기타표시사항

- 혼합제제류 제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혼합제제류 명칭 및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다.
- 타르색소를 혼합 또는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는 “혼합” 또는 “희석”이라는 표시와 실제의 색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표시사항

가)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

다) '식품용' 단어 또는 [도 5]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라)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마) 기타표시사항



2)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음

제품명

- 1)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
- 2) 제품명에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3)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흑마늘○○(흑마늘 ○○%)
 - 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 함량 ○○%**)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제품명

나) **[식품]**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함[18.4.26.개정]

[예시] 과일○○[사과 ○○%, 배 ○○%]

다) **[식품]** 해당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의 함량 표시 하지 않을 수 있음**[18.4.26.신설]

[식품유형명 사용 예시] ‘○○토마토케첩’ [식품유형:토마토케첩]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사용 예시] ‘○○햄버거’, ‘○○김밥’

[요리명 사용 예시] ‘수정과 ○○’, ‘식혜 ○○’, ‘불고기 ○○’

제품명

라) “맛” 또는 “향” 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로 **합성향료만을 사용** 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함

[예시] 딸기향캔디 [합성딸기향 첨가]

4) 수출국에서 표시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할 때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번역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로 표시한 제품명은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제품명

5)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나)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제품명

6)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식육의 종류(품종명 포함)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 또는 부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예시) 등심(50%), 목심(30%), 안심(20%)을 원료로 포장육 제조 시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심' 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등심(50%), 목심(30%), 안심(20%)'를 주표시면에 14포인트로 표시

-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예시) 쇠고기와 돼지고기 혼합하여 포장육 제조시 제품명을 '우돈' 이라고 할 경우
-> 주표시면에 '쇠고기 60%, 돼지고기40%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최소분류 유형

-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생략가능

2) 포장육, 양념육, 가열양념육 및 수입하는 식육

-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약처 고시]” 준용

-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포함된 경우 “용도” 등으로 표시 가능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 소: 등심, 양지 10개 대분할부위, 양지에서 양지머리, 차돌박이 등 소분할 부위 30개

* 돼지: 등심, 삼겹살 등 7개 대분할부위, 삼겹살에서 삼겹살, 갈매기살 등 25개 소분할 부위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식품등 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음
- 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하여 식품 제조·가
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위
탁을 의뢰한 업소명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함

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시] 유통전문판매업 : 업소명,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소재지

업소명 및 소재지

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 소분하고자 하는 식품이 수입식품인 경우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소명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식품소분업 : 업소명,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소재지

[예시] 식품소분업 : 업소명, 소재지, 수입판매업 : 업소명,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업소명 및 소재지

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영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이 경우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수입판매업소 : 업소명,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마) 그 밖에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판매업소 : ○○백화점,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소재지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1)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 등의 “연월일” 의 표시순서가 동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 의 표시 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 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 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 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함
- 2) 유통기한 등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유통기한 등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3)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 · 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축산물의 경우 해당온도 병행표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4) 유통기한 등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유통기한 등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 5)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안됨
- * [제조일자]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제조일자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됨

내용량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 1)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하여야 함**
-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범위) 별도 규정
- 2) 섭취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그 액체 또는 얼음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함**
- 3)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에 대하여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
(예시) 100 g(240 kcal)
- 4) **[축산물]** 포장육 등 주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치에 내용량 표시위치 명시 가능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0g 이하	9%
	50g 초과 100g 이하	4.5g
	100g 초과 200g 이하	4.5%
	200g 초과 300g 이하	9g
	300g 초과 500g 이하	3%
	500g 초과 1kg 이하	15g
	1kg 초과 10kg 이하	1.5%
	10kg 초과 15kg 이하 15kg 초과	150g 1%
용량	50mL 이하	9%
	50mL 초과 100mL 이하	4.5mL
	100mL 초과 200mL 이하	4.5%
	200mL 초과 300mL 이하	9mL
	300mL 초과 500mL 이하	3%
	500mL 초과 1L 이하	15mL
	1L 초과 10L 이하	1.5%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150mL 1%

원재료명

1) 식품(축산물)에 대한 표시

- 가)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 가능
- 나) 원재료명은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
- 다) 품종명을 원재료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시 : 청사과, 와규]
- 라)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시 : ○○농축액, ○○추출액, ○○발효액, 당화○○]

원재료명

마)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함

바)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그 추출물(또는 농축액)중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만, 고형분 함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배합함량으로 표시 가능

[예시] 딸기 추출물(또는 농축액)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 함량 ○○%)

[예시] 딸기 바나나 추출물(또는 농축액) ○○%(고형분 함량 딸기 ○○%, 바나나 ○○% 또는 배합 함량 딸기 ○○%, 바나나 ○○%)

원재료명(식품)

- 사)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의 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음
- 아)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모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음
[예시] 물, **설탕**, 식물성크림(야자수, **설탕**, 유화제), 혼합제제(**설탕**, 안식향산나트륨) → 물, **설탕**, 야자수, 유화제, 안식향산나트륨
- 자)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원재료 및 성분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시] 닭고기(기계발골육)

원재료명(축산물)

자) 기계발골육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기계발골육 100%: 닭고기(기계발골육)
- 정육과 기계발골육 혼합: 닭고기 00%(정육 00%, 기계발골육 00%)

차) 비살균원유 등으로 만든 유가공품의 경우

- “비살균원유” 등으로 표시

카)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과 성분명 표시하는 경우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함량 표시

원재료명(축산물)

- 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방법[18.2.23.신설]
-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 서식에 기재한 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 비율 표시
 -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 표시 가능
- [예시] 베이컨 원재료 배합비율: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기 함량: $94\%(80/85 * 100)$

원재료명

2)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

가) [표 4]의 식품첨가물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 [예시 : 삭카린나트륨(합성감미료) 등]

나) [표 5]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또는 간략명

다) [표 6]의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함)

- 다만, [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함

라)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표시 등은 [표 5]의 식품첨가물 표시 규정을 따를 수 있음

[예시 :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원재료명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도
삭카린나트륨	감미료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가티검	
감색소	
감초추출물	
결정셀룰로오스	결정섬유소
고량색소	
구아검	
국	
규산마그네슘	규산Mg
규산칼슘	규산Ca

[표 6]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주용도
5'-구아닐산이나트륨	구아닐산이나트륨, 구아닐산나트륨, 구아닐산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구연산		산도조절제
구연산망간	구연산Mn	영양강화제

원재료명

3) 원재료명 표시 특례

- 가)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음
- 나) 복합원재료에 다른 복합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해당 식품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음
- 다) 전분은 “전분명(000전분)” 또는 “전분” 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라) 식품공전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음

원재료명

- 마)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의 원재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바) 식품의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 주표시면의 면적이 30cm² 이하인 것은 물을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 아) 식품첨가물 중 천연향료나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각각 “천연향료”, “합성향료” 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최근 개정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17.12.6)

표시기준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에탄올' 사용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에탄올' 이외에 '알코올' 도 표시허용
.조사처리식품은 '방사선조사' 로 표시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 및 용도인 '감마선 발아 억제' , '전자선 살균' 표시허용
<신설>	.식품공전에 식품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 로 표시하도록 개정
<신설>	.식품공전에서 효소식품의 효소규격이 정량규격(표시량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소식품에는 α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의 효소함량을 표시토록 개정
<신설>	.수입식품에 표시된 EXP가 유통기한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수입담당 공무원과 영업자간 혼선이 있어,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영문명 예시 추가 * 유통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EXP, E
<신설>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와 주표시면에 함량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17.12.6)

표시기준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신설>	<p>.주류 이외의 식품에 Non-alcoholic, Alcohol free, No alcohol added를 표시 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 임을 표시하고, Non-alcoholic 표현의 경우 “에탄올 1% 미만 함유” 를 함께 표시</p> <p>*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 “무알코올[성인용]” , “Alcohol free[성인용]”</p>
. 복합원재료에 대한 민원 질의 다수	. 복합원재료는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 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으로 명확화
<신설>	<p>.영양성분 등의 활자크기(10포인트 이상)를 [도 3]표시방법에 명시</p> <p>*여러 표시사항 중 중요사항인 ‘열량’ , ‘영양성분의 명칭’ 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p>
. 화학적합성품을 혼합한 경우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 표시	.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으로 ‘화학적합성품’ 명칭이 ‘식품첨가물’ 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혼합제제류에 한하여 명칭과 사용기준이 정해진 경우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

식품등의 표시기준('18.4.26)

표시기준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 21개 품목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으로 지정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잣' 추가
<신설>	·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 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 생략
· 빙초산 등 9개 식품첨가물에 취급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에 취급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추가
<신설>	· 조리식품 사진, 그림 근처에 “조리에”, “이미지 사진 등 문구 표시(10 포인트 이상)
· 인삼의 열매를 사용해도 '인삼' 으로 표시 가능	· 인삼의 열매를 사용한 경우 '인삼열매' 로 표시
<신설>	· 메주에 대두 함량 표시
·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에 100% 표시 가능	· 환원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에 100%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 [예]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식품등의 표시기준('18.4.26)

표시기준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고체성상의 다류 및 커피는 유통기한 표시	유통기한 이외에 품질유지기한 표시 * 현행 전부개정고시('16.6.13) 당시 누락 내용 반영
수입 기구의 경우 '제조업소명' 대신 '제조위탁업소명(원산지)' 표시 가능	국내 제조 기구도 '제조업소명' 대신 '제조위탁업소명' 표시 허용
<신설>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포장 시 그 중 가장 빠른 제조연월일 표시
증류주 원액(위스키 원액)의 경우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표시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 중 '물' 은 위스키 원액을 일정 도수(40도)로 조정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고 있어, 물은 원재료로 보기 어려워 표시 제외
과실·채소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되어야 함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되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통칭명칭 사용시 실제 사용된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예] 과일○○[사과 ○○%, 배 ○○% 등]
<신설>	해당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식품 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의 함량표시 제외가능 [식품유형명 사용 예시] "○○토마토케첩" [식품유형토마토케첩] "○○조미김" [식품유형:조미김] [즉석섭취·편의 식품류명 사용 예시] "○○햄버거", "○○김밥", "○○순대" [요리명 사용 예시] "수정과○○", "식혜○○", "불고기○○", "피자○○", "짬뽕○○", "바비큐○○", "갈비○○", "통닭○○"

축산물의 표시기준('18.2.23)

표시기준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산란일은 채집한 날,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명 표시	.산란일 정의 개정(산란시점으로 부터 36시간 이내),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 를 표시하고 '산란일' 및 '사육환경번호' 를 함께 표시 *시행일: 생산자고유번호[18.4.25.], 사육환경번호[18.8.23.], 산란일자[19.2.23.]
<신설>	.수입제품의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에 영문명 예시 신설 * 유통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Expire date
<신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달걀을 '재포장' 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명(수입계란 제외), 내용량,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
<신설>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와 주표시면에 함량 표시
<신설> .지침으로 운영(월별 또는 생산단위별 원재료 투입량 및 완제품 생산량 기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 표시방법 규정 마련(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기준으로 표시, 다만,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등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 가능)
<신설>	.냉동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실온·냉장으로 유통시 해동연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규정 마련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식품표시 관련 규제 운영방안

● 시행일

식품표시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 시 그 개정 일자 및 횟수에 관계없이 개정일로부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을 짝수년도 1월1일로 통일

[개정] 2018년 1월 1일, 7월 1일 → [시행] 2020년 1월 1일

[개정] 2019년 7월 1일 → [시행] 2022년 1월 1일

예외) 식품안전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행일에 관계없이 미리적용 가능

[국조실 주관] 식약처,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환경부 합의

● 정보제공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정보 >식품표시정보

- 법령고시전문, 제개정/입법행정예고, 홍보/보도/교육자료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안 [2017.9.29]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제공 강화

행정예고(안)

구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표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생략 가능 · 동 특례 규정은 '96년에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해 신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생략 규정 삭제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다만, 영세 농민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해 표시 생략 규정 신설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 행정예고(안)(2018.5.31)

목적과 방향

- **식품과 축산물의 상이한 표시기준으로 민원 발생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에 한계 발생**
 -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상이한 내용을 합리적 방향으로 통일하는 개정안 마련
- **식품공전 전부개정에 따른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유형통합으로 식품공전과 표시기준의 조화 필요**
 -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유형통합에 따른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 개정안 마련 [18.5.31.행정예고]

주요내용

구분	현행	통합(안)
즉석판매 영업자 표시	· 축산물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육가공 품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 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도 표시의무 부과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해동 관련 표시	· 해동 가능 식품(초콜릿류 등에 해동업체 정 보 없음 * 축산물(치즈류 등의 경우에는 해동업체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의무	·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축산물과 동일하게 “해동 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추가
외국어 활자 크기	· 축산물은 외국어 활자 크기 제한 없음	· 식품과 동일하게 한글과 외국어 혼용(병기시 외국어 활자크기를 한글보다 더 크게 못하도록 규정 마련
알레르기 표시	· 축산물은 21개 품목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으로 지정	·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젓’ 추가하여 식품과 동일하게 22개 지정 < 18426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반영>
카페인 허용오차	· 축산물은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의 허 용오차 범위가 표시량의 120%이하	· 식품과 동일하게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의 허용오차 범위 를 표시량의 90~110%로 하향

주요내용

구분	현행	통합[안]
제품명으로 통칭명칭 사용	. 축산물은 제품명으로 통칭명칭 사용시 원재료 합계량 15%이상으로 함량 제한	. 식품과 동일하게 통칭명칭 사용시 함량 규정 삭제 < '18426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위탁생산(OEM)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축산물에 대한 표시 규정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축산물의 OEM가능	. OEM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옆에 “OEM” 또는 “위탁생산” 표시 규정 마련
식품공전 반영	. 식품공전에서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이 통합되었으나 표시기준에 미반영	. 통합된 유형에 따라 유형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전면 재정비

특수용도식품

특수용도식품 관련 지침

'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 및 표시·광고 지침

2017. 2. 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기존 4종의 질환별 환자용 식품* 이외에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환자용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환자용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 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업체가 '환자용식품'을 제조·가공, 표시·광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연하곤란환자용 식품

- 식약처 홈페이지(정책정보 -> 식품정책정보 -> 식품등의 표시)

특수용도식품 관련 지침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해설서 - 표시·광고 심의 사례 포함

2017. 2. 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이 해설서는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시 영업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표시·광고 관련 법률,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 사례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 심의 사례의 추가 등이 있을 경우 해설서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타당성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고시 전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해설서에 제시된 사례는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내용 일부의 문구 및 이미지를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표시·광고 전체의 내용 및 충분한 근거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그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설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43-719-2853

• 팩스번호: 043-719-2850

- 식약처 홈페이지[정책정보 -> 식품정책정보 -> 식품등의 표시]

감사합니다.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보호조치 요구 방법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전화 044-200-7773/팩스 044-200-7949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18. 8~9월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차

1. 개요
2. 필요성
3. 법률 제정으로 인한 효과
4. 법률 주요내용

➤ 식품 표시의 중요성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적 수단

- 정보의 대칭성이 보장되면 소비자는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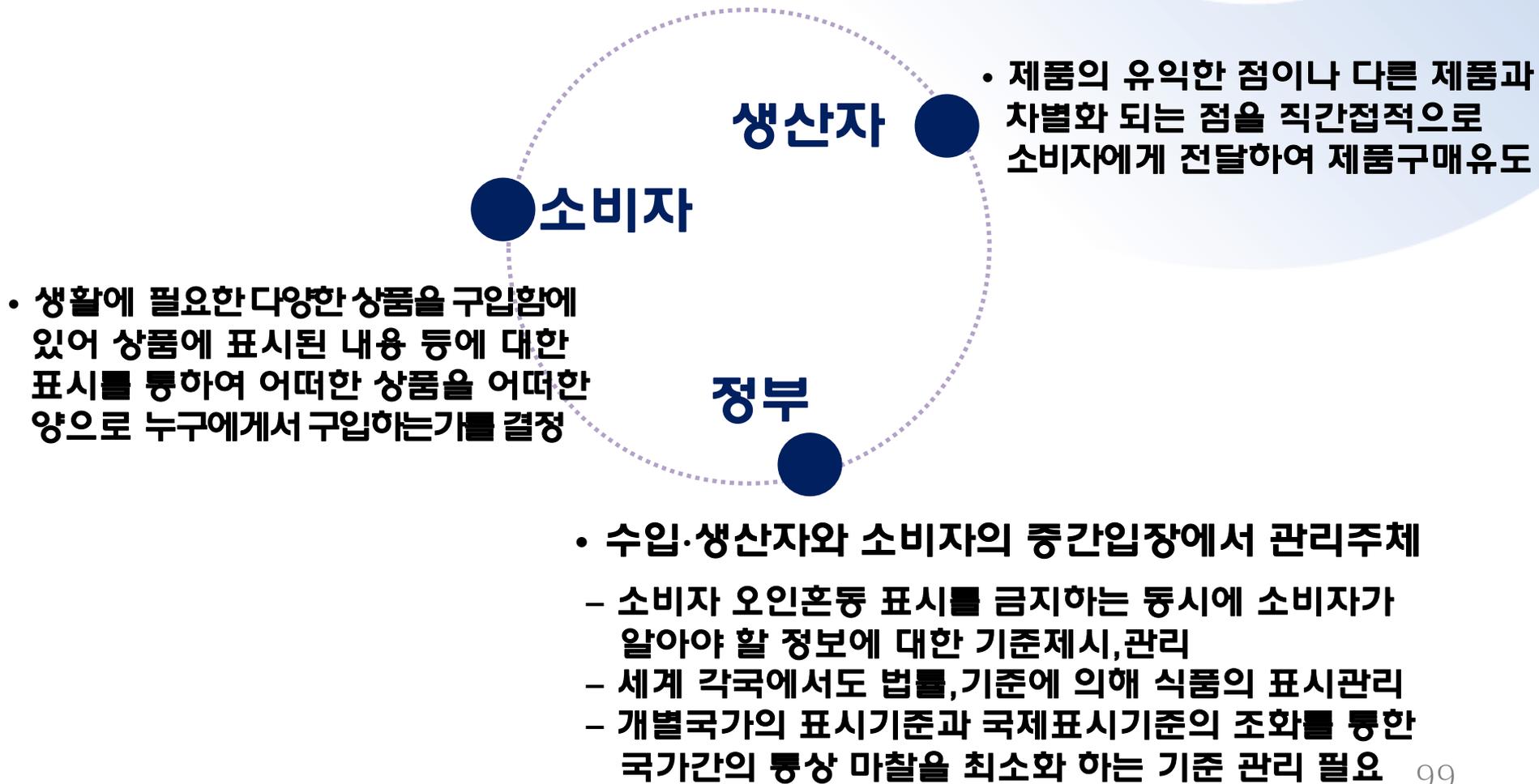
○ 식품표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보다 높음

- 표시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편익은 비용에 의해 높지 않지만 국민건강, 의료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 편익이 비용을 상당히 초과

○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수단 및 건전한 거래 확보 환경 조성

- 산업체는 제품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해당제품의 특징을 강조한 마케팅이 가능하며 허위·과대 표시를 배제하여 공정한 거래 확립 가능

➤ 식품 표시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 현황

식품표시제도는 3개 법령 및 7개 고시로 산재되어 운영

법령

고시

- 1) 식품위생법
- 2) 축산물 위생관리법
-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축산물의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 현황

식품표시제도는 3개 법령 및 7개 고시로 산재되어 운영

식품의 표시·광고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표시기준의 세부적인 내용·방법은
유사법률*과는 달리 대부분이
고시로 포괄 위임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표시)

고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축산물의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소비자측면

- 온라인 시장 성장 등에 따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상 경제상 피해 지속

- *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실적 : 552건(2015) → 540건(2016) → 341건(2017)
- * 온라인 표시광고 즉시 차단건수 : 18,431건(2015) → 20,627건(2016) → 41,435건(2017)

영업자측면

-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로 운영
→ 잦은 고시 개정에 따른 영업자의 혼란
- 품목별(식품/축산물/건기식)로 관리하는 불편사항 발생
→ 품목별로 개정 시행시기를 구분하여 포장지 재고 등 관리

소비자

☑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 도모

- 실증 하지 못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중지 명령
⇒ 식품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영업자

☑ 품목별 표시의 일관된 관리 가능

- 불필요한 관리 인력·경비 절감,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

기타

☑ 법령별 유사 동일 규정 개정으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해소 및 표시 정책의 일관성 제고

-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표시사항을 법률에 규정
⇒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집행 가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총 31조 구성

제1조	목적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2조	정의	제14조	시정명령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4조	표시의 기준	제16~19조	영업정지, 품목 등의 제조정지 등
제5조	영양표시	제20조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7조	광고의 기준	제22~24조	국고보조, 청문,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표시 또는 광고내용의 실증	제26~29조	벌칙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30조	양벌 규정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1조	과태료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법률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제1조(목적)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식품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
기구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포장을 포함)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

법률 주요 내용 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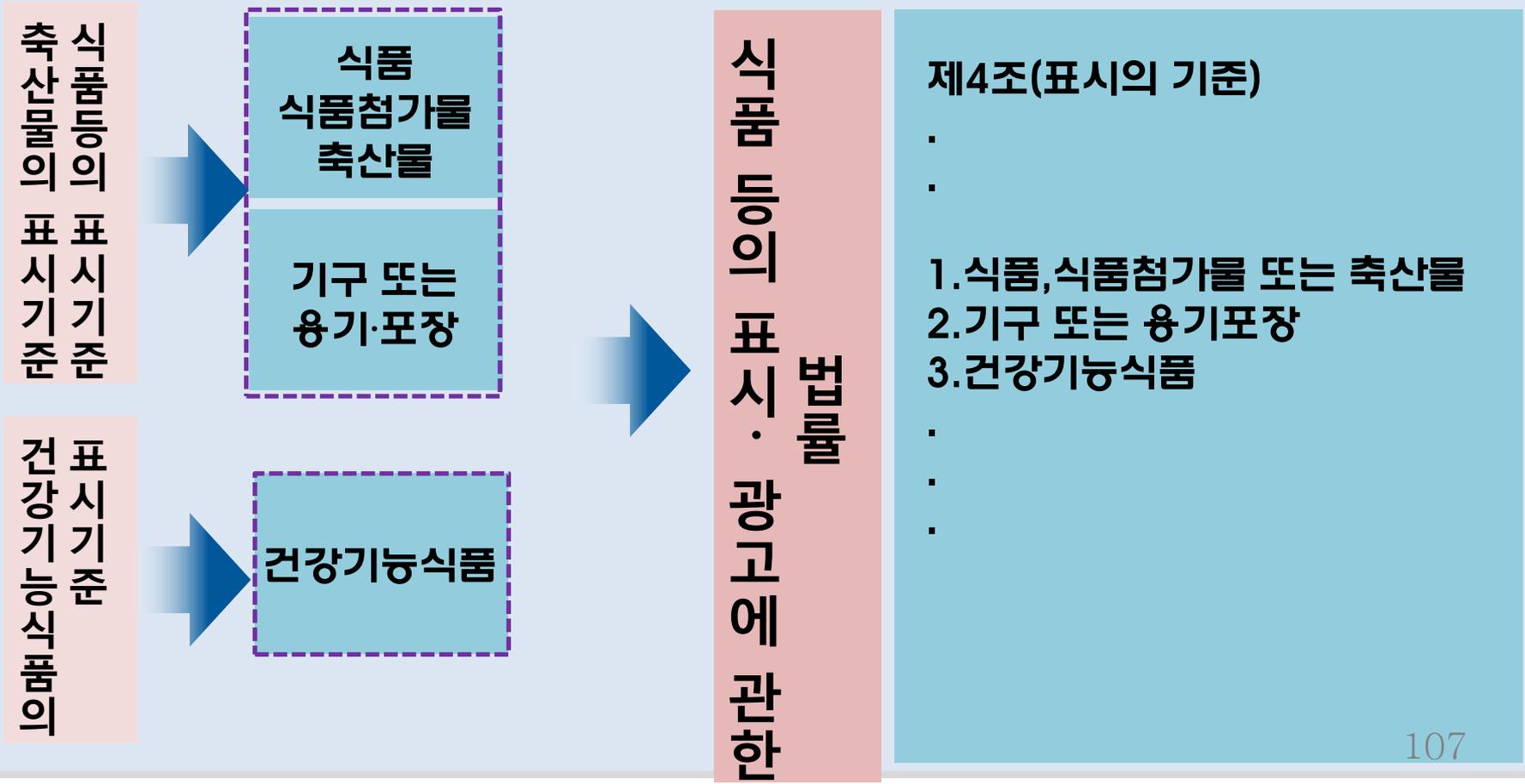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
표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영양표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
광고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영업자	개별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한 자 또는 허가 받은 자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1)

☑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표시대상을 통합
 → 표시대상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음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2)

☑ 세부 품목별 표시사항 규정

제4조(표시의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 가. 재질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3)

☑ 세부 품목별 표시사항 규정

제4조(표시의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3. 건강기능식품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 주요 내용 제5조(영양표시)

☑ 제5조(영양표시) - 표시대상,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함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총리령(안) - 영양표시 대상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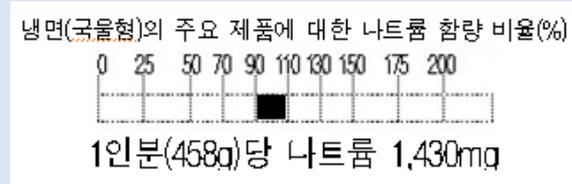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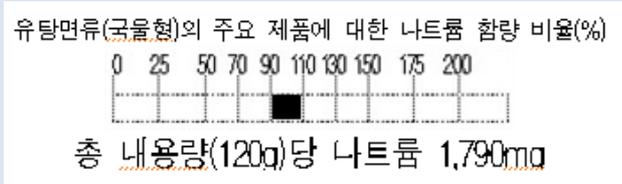
1. 건강기능식품 2.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3.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4. 빵류 및 만두류, 5.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6. 잼류, 7.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8. 면류, 9.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10. 특수용도식품, 11.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2.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3.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14. 시리얼류, 15. 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중 우유류 · 가공유류 · 발효유류 · 분유류 · 치즈류, 16.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법률 주요 내용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보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표준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함



식품위생법 제 11조의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총리령(안)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의무품목(식품유형)

→ 국수, 냉면,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샌드위치)

법률 주요 내용 제7조(광고의 기준)

☑ 제7조(광고의 기준)

- 식품 등을 광고할 때는 제품명, 업소명을 반드시 포함
- 광고 시, 준수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

<총리령(안)>

-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조제유류 제외),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 광고 금지
- 조제유류에 관하여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 금지 등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1)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식위법 시행규칙 →표시광고법률로 상향조정)

-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2)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항목 및 범위 규정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안)

식품등의 명칭·종류·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 방식 포함), 등급·품질·영양, 원재료·성분, 영업소 명칭, 상호명, 내용량, 제조연월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산란일·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 식품조사처리의 표시·광고, 유전자변형 식품등 표시·광고, 식품등이력추적관리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안)

1.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
2. 영업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한 식품
3.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등
4.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시·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 등

법률 주요 내용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1)

☑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 실증제?

-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실증하여야 함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해당 표시·광고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증자료 제출요청

◆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

-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식약처장은 임시적으로 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함
-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률 주요 내용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2)

☞ 표시광고 실증관련 유사 입법례(국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일	1999. 7.	2012. 2.	2014. 9.
규정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제6조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제14조 시행규칙 제23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16조의11 시행령 제22조의11
실증 대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등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
실증 방법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 또는 사업자 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연간 실증 건수	300여건 (‘14)375건, (‘15)286건, (‘16)304건	80여건 (‘15)78건, (‘16)25건, (‘17)133	70여건 (‘17, 90건)

법률 주요 내용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3)

☑ 표시광고 실증관련 유사 입법례(해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 제5조

: 법률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 광고주에게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인 경우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음

◆(일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 상품·용역의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표시를 규제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법률 주요 내용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4)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방안 (총리령)

실증자료의 범위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기타 식약처장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실증자료의 요건, 제출방법, 심사기준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식품등을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관의 결과자료 이어야 함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법률 주요 내용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1)

☑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 ◆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 할 경우, 자율심의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함

자율 심의기구

자율의 의미



- 행정청의 사후 규제가 있기 전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관 등에서 심의를 받아 적법한 표시·광고

법률 주요 내용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2)

기존의 운영방식(사전심의)

-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사전심의 업무는 각 법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심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2017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사전심의 현황

	심의건수	심의 결과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5,517(건)	1,100(19.9%)	4,210(76.3%)	207(3.8%)
특수용도식품	1,408(건)	32(2.3%)	1,334(93.7%)	42(3%)

법률 주요 내용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3)

☑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 의미

- **현행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 위헌 결정**
 -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해 허위광고로 보거나(18조) 그 행위에 대한 벌칙(44조) 및 행정처분(32조) 부과를 무효화
 - ☞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표현의 자유 침해**
 - ▶ 사전 광고심의(16조)에 대한 결정주문은 없으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만큼 사실상 무효화(자문 변호사 의견)
- **따라서 자율심의 기구를 통한 사전심으로 위헌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 보호**

법률 주요 내용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4)

☑ 자율심의기구 관리 - '등록제'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기관 또는 단체>

- ◆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 ◆ 「식품위생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단체 설립)에 따라 설립된 단체
 -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안)심의관리자 1명과 전문가 1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전담체계, 수수료를 반납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규정
- * 부실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요건 마련(심의물량에 따라 추가인원은 자율적으로 산정)

법률 주요 내용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1)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회 구성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1. 식품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 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산업계는 1/3 미만이어야 함

법률 주요 내용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심의
- 개별법에 따른 법정위원회 자문도 가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 주요 내용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식품표시의 중요성에 비해 소비자 이해도 및 활용도가 낮아 교육홍보 필요

- ☞ 소비자 교육 및 홍보는 동업자조합, 소비자단체 등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 식품등의 표시·광고, 영양표시·광고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매년 소비자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법률 주요 내용 제14조(시정명령)

☑ 제14조(시정명령)

-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제4조제3항,제5조(영양표시)제3항,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3항)
- ▶ 제7조(광고의 기준)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 제8조제1항(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법 제8조제1항

-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광고
- ◆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 제9조제3항(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률 주요 내용

제15조(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 제15조(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위반사항

-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4조제3항)
-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제8조제1항)

- ▶ 영업자는 회수 또는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관할관청에 보고)를 취함
- ▶ 관계 공무원은 그 식품 등을 압류, 폐기 등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함
- ▶ 식품 등의 회수, 압류·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는 「식품위생법」 준용

법률 주요 내용

제16조(영업정지 등)

☑ 제16조(영업정지 등)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4조제3항)
-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제8조제1항)
- 3) 시정명령 위반(제14조)
- 4) 회수 미실시, 회수보고 미실시, 거짓보고(제15조제1항 및 제2항)
- 5) 압류, 회수, 폐기명령 미이행(제15조제3항)

▶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영업자가 영업정지를 위반하여 계속 영업 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

법률 주요 내용

제17조~제19조

☑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 6개월 이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4조제3항)
-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제8조제1항)

▶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

☑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양수인등에게 승계

☑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단, 미표시 또는 표시위반(제4조제3항),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제8조제1항)를 위반하여 제16조(영업정지),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법률 주요 내용

제20조~제21조

☑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제8조제1항~제3항)하여 제16조(영업정지)제1항~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 판매한 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 ▶ 제15조~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처분내용, 영업소, 식품 등의 명칭 등 관련 영업정보 공표
- ▶ 공표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법률 주요 내용

제22조~제24조

☑ 제22조(국고 보조)

- ▶ 식약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제23조(청문)

- ▶ 자율심의기구 등록취소,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시

☑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식약처장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 ▶ 식약처장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법률 주요 내용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회 위원 = 공무원

< 「형법」 제129조~제132조까지 규정 적용 >

제129조(수뢰,사선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또는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26조(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자(법 제8조제1항제1호~제3호까지)

-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법률 주요 내용

제26조~제29조(벌칙)

☑ 제27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가능

-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4조제3항)
-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자 (제8조제4항~제9호)
 -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광고
 -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3) 회수 또는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제15조제1항)
- 4) 회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5조제3항)
- 5)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받은 자, 영업신고를 한 자가 영업정지 명령 위반, 계속 영업한 자
- 6) 식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정지 명령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법률 주요 내용

제26조~제29조(벌칙)

☑ 제28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건강기능식품은 제외)

*건강기능식품은 제27조(벌칙)적용

2) 품목(류) 제조정지 위반 등

☑ 제29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표시광고에 있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계속 표시광고 한 자

2) 회수계획 미보고, 허위보고 한 자

법률 주요 내용

제30조~제31조

☑ 제30조(양벌규정)

- ▶ 제26조~제29조(벌칙) 관련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31조(과태료)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영양표시 위반
- 2)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위반
- 3) 광고의 기준을 위반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과태료는 시행규칙에 따라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부과·징수

법령 추진 계획(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18.7	2018.9	2018.10	2018.12	2019.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행정)예고		■			
규제심사			■		
공포(고시)				■	
시행					2019. 3.14

감사합니다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보호조치 요구 방법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전화044-200-7773/팩스044-200-7949

식품안전표시인증과

